

의안번호	2215214
의 퇴 인	정점식의원
회 답 일	2026. 1. 26.
추계번호	25C6871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보호·지원을 위한 홍보영상의 제작·배포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2억 1,000만원(연평균 2억 4,2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등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·배포·송출 (안 제16조의2)	242	242	242	242	242	1,210	24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6조(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내 학대·폭력·가정 해체 등의 사유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 1.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 2.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.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. 그 밖에 자립에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제3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대상,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)	재량규정
2	안 제16조의2(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보호·지원을 위한 홍보영상의 제작·배포·송출)	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·지원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「방송법」 제2조제23호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6조(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)	×	- 입소하지 않은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 등은 파악이 어려워 비용 산출 불가
2	안 제16조의2(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보호·지원을 위한 홍보영상의 제작·배포·송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사·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(안 제16조의2)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예방·홍보와 관련한 영상을 제작하고 송출을 의무화하는 경우, 영상 제작 등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음
- 본 추계에서는 성평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유사 영상 제작·송출 사례를 적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
 -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·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예방·홍보사업¹⁾을 실시하고 있고, 해당 사업의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과 영상송출비(2026년 예산 기준)는 각각 다음과 같음
 -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: 80백만원(2회×40백만원)

1) 가정폭력·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(2159-432) 사업 중 내역사업으로 일반용역비(210-14)로 편성

－ 영상송출비: 162백만원

[표 2] 안 제9조의2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등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·배포·송출 (안 제16조의2)	242	242	242	242	242	1,21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assembly.go.kr